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줄기업 병원관

2024/ 2/ 14 통권 1662호

CEO 에서이 - 이해익원장 패션에서 IT기업으로, 한세실업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CFO 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디지털 국세행정 구축에 박차 를가하다
-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CMO·미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개발사업 위탁받은 법인이 단순 대행업무만 한다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으로 함 (p.11)

저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상속공제·증여공제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개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 범위	국내에 주소, 183일 이상 거소 를 둔 사람 국내 주소 둔 날, 국외근무공 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100% 현지법인 파견임직원	• 거주자 아닌자(183일 미만 거 소), 국외이전출국 다음날 • 외국인
수중재산증여세	국내외 모든 재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과세합산범위	특정증여일 소급 10년 합산	좌동(소급 10년 합산)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 공제 적용	적용 안 함
직계존비속공제	5천만원 공제적용(미성년자 2 천만원)	적용 안 함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 적용	적용 안 함
결혼 · 출산증여공제	자녀당 합 1억원 적용	적용 안 함
생활비 · 교육비 등	학자금 등 비과세 적용	좌동(비과세 적용)
혼수용품	통상 필요금액 비과세	좌동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적용(일괄 5억)	기초공제 2억 적용(3억 자녀공 제는 적용 안함)
배우자 상속공제	5억≦실제상속≦30억 적용	적용 안 함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구독료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024년2월14일(수) • 주간제 7호 • 통권

2 월

29 일 까

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월30000원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2호 / 주간 7호

2024. 2. 14.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829-7575

FAX: 02) 718-8565



차

4 5	회원가입	문의	안내
------------	------	----	----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상속공제·증여공제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田지		
C E O 에 세 이	패션에서 IT기업으로, 한세실업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세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지급이자 토지취득원기반영 여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4 5		
눈에맞는절세미인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6		
매일절세재무요점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 정부 감세 정책과 세수효과 전망	8 9		
직장인Survival	관계형 조직이 규칙 위반을 조장한다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회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99, 2023.05.17)	11		
세정뉴스와 해설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오는 2월 29일까지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개발사업 위탁받은 법인이 단순 대행업무만 한다면 개발보수만 공급가 액으로 함	11		
세 무 정 보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디지털 국세행정 구축에 박차를 가하다	14 27		
회 계 정 보	-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33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경영진코.

패션에서 IT기업으로, 한세실업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외곽에 자리 잡은 한세실업TG법인의 사업설명회가 최 근 크게 보도됐다.

공장현장에는 QR코드로 이어진 길을 따라 '지게차'모양의 로봇이 분주하게 옷감을 배달하고 있었다. 원단이 옮겨지자 컴퓨터는 곧바로 재단을 시작했다. 그런 후 옷을 이어 꿰매는 과정은 30초도 안돼 뚝딱 끝냈다. 이렇게 이곳에선 최대 하루 60만장, 한 달에 1,500만장 옷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시스템 '햄스'(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한 효과다. 이 회사 김신일수석은 "과거엔 원단운반에만 작업자 5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로봇관리자 한명과 두 대의 로봇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세실업은 지난해 베트남에서만 10억달러(약1조 3,000억원)어치의 의류를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했다. 한세실업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의류를 만드는 세계적인 패션기업이다.

주요 고객사로 H&M, 갭, 아메리칸 이글 등이 있다. 1982년 김동녕회장이 창업한 한세는 이처럼 패션기업에서 정보기술(IT)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남미 콰테말라 신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미국은 원사와 원단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중남미에서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회사임원이 설명했다.

중남미는 미주시장 접근성이 좋고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따른 무관세혜택 니어쇼어 링(소비시장 인접국가로 생산기지이전) 인프라 강화등이 기대되는 곳이다. "내년에는 3조원대 매출을 전망한다"고 회사임원이 설명했다.

한세실업이 속한 한세그룹에는 한세엠케이, 예스24와 동아출판이 성장하고 있다.

한세그룹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김회장은 1972년 '한세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열고 애쓰다가 1979년 2차오일쇼크로 부도를 맞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1982년 '한세실업'으로 다시창업해 오늘에 이르렀다. 부도가 큰 체험이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이룩한다. 또 CEO가 권한을 휘두르는 것보다 아래로 위임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 또 "한세는 '한국에서 세계로'를 뜻한다"고 김회장은 늘 마음 다지고 했다. 김회장과 필자는 서울상대 경제학과 64학번 동기다. 김회장은 경기고 출신이고 필자는 서울고 출신이다. 게다가 모두 공부나 열성인 드라이한 서울상대 풍토에서 한 학년에 한두 명으로 이어오는 문우회(文友會)에서 만난 친구다. 모두 시 두어 편을 써오면 서울고 미술반 출신으로 시서화를 오랜세월 좋아한 필자가 그림을 그린 후 시를 넣어 매년 광화문과 시청근처에서 시화전을 열곤 했다.

문우회 골수 멤버로 5년 선배인 고 신영복형이 아쉽게 일찍 떠났고 또 64학번 동기로 필자가 시화작품에 열중할 때 키가 커서 어슬렁대던 친구 고 정운영교수도 일찍 떠나 안타깝다.

이제 김회장과 필자는 나이 80을 맞으면서 마무리가 중요해졌다. 오랜 세월 삶을 이룩하면서 현장경영과 세상에 대한 깊은 뜻을 기록에 남기는 'CEO대화록'을 한국독자와 세계독자를 위해 알차게 완성하면 좋겠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일 (금)	2월 5일 (월)	2월 6일 (화)	2월 7일 (수)
미		달		러	(USD)	1332.50	1325.10	1334.60	1329.60
일		본		엔	(JPY)	910.24	892.23	897.75	899.65
영	국	파	운	드	(GBP)	1698.60	1671.61	1672.99	1675.76
캐	나	다	달	러	(CAD)	995.74	983.63	985.64	985.84
홍	콩		달	러	(HKD)	170.39	169.43	170.62	169.97
중		국		원	(CNH)	185.21	184.48	185.18	184.51
유		로		화	(EUR)	1449.23	1427.53	1433.76	1430.12
호	주		달	러	(AUD)	876.25	861.25	865.02	867.83
싱	가	폴	달	러	(SGD)	996.93	986.12	990.46	989.32
말리	베이기	니아	링 7	기트	(MYR)	281.71	280.93	280.94	279.01

 $2024 \cdot 02 \cdot 14$ www.eAnSe.com 3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우리나라와 대만은 22년 1월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된 것으로 아는데, 대만 국적 비거주자가 우리 나라에 3일간 방문하여 강연을 하고, 본원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1.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2. 원천징수를 한다면 내국인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처 럼 신고 하면 되는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전 문직업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대상 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국 내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만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 국내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 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8년~2020년까지 개정 후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 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를 하 였습니다.

문의사항: 이 경우 2018년~2020년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 물류비용 세 액공제 경정신고를 추가할 경우 제127조 중복자원의 배제에 해당되는지요? 아님 추가 신고가 가 능한지요?

귀사의 경우 다른 감면이 없고 투자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라면 물류비용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지급이자 토지취득원가반영 여부

법인이 분양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고 토지대금은 2개월 완불하였으나 계획지구라 토지등기는 4년이 지나 등기하였습니다(건물도 1년만에 완공).

차입금은 1년 마다연장하여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토지등기까지는 sh공사토지분양계약서로 대출하였고 토지등기후는 본토지를 근저당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금은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5년간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건지 아님 토지대금완불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건지, 정확 한 지급이자에 대한 취득원가 반영을 언제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취득전 이자만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등기이후 차입금 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다시 기본재산을 구입해야 양도세가 발생안되는지 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양 도차익에 대해 일부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부는 펀드및 채권(국채)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 1.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제4조3항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 항)
- 2. 처분 이후에 발생된 차익으로 펀드 및 부동산구입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경리인코너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인적용역 등을 일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기타소득은 통상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제공소득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로 신고 · 납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 8.8%의 세율을 곱하여 신고 · 납부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를하든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간 총수입금액은 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공제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절세차원에서 당연한 납세자의 의무인 것이다.

필요겸비공제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인데,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과의 비교판단으로 그 절세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여 신고 · 납부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할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4%나 35%, 38%, 40%, 42%,

45%의 세율이 적용되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당연히 기타소 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사례]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근로소득의 각종 소득공제금액은 2,200만원이라고 가정함).과 기타소 득으로 750만원인 경우

1.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 750만원×40%×20%=6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소득공제)=2,800만원=(1,400만원×6%)+(1,400만원×15%)=84만원

+210만원=294만원

총 납부세액 =(1) +(2) = 354만원

2.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750만원×40%)+(5,000만원-2,200만원)=300만원+2,800만원=3,100만원

소득세액: (1,400만원×6%)+(1,700만원×15%)=84만원+255만원=339만원

상기의 사례를 도표로 비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과세
과세표준	기타소득:750만원 × 40% = 30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2,800 만원	300만원(기타소득)+2,800만원(근로소 득)=3,100만원
소득세액	기타소득: 300만원× <u>20%</u> =60만원 근로소득: 2,800만원×세율=(1,400만원× 6%)+(1,400만원×15%)=294만원 총세액: 60만원+294만원=354만원	(1,400만원×6%)+(1,700만원× <u>15%</u>)=339 만원
세액비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하여 신고한 경 합은 15%이므로)	우가 15만원 절약됨(분리과세는 20%, 종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屋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ПΗ	상장법인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 · 납부 대상	신고 · 납부 대상	신고 · 납부 대상	신고 · 납부 대상
		신고 · 납부 대상	신고 · 납부 대상	
소액주주	신고 ㆍ 납부 대상 제외		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신고 · 납부 대상

☑ _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구분	'16.4.1. 이후 양도	'18.4.1. 이후 양도	'20.4.1. 이후 양도	'24.1.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원 이상

정부 감세 정책과 세수효과 전망

	세수효과 및 추계
2023년 개정 세법(2024년 시행)	기획재정부 '-7546억원' 국회예산정책처 '-1조 762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10억 → 50억원) 상향	2022년 결정세액 l조 7000억원* 2024년 l조원 안팎 예상 '-7000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2025년 시행 예정)	폐지 시 연평균 소득세 '-1조 5000억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12월)	법인세 '-1조 5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2025년 12월)	법인세 '-1조원'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 '-3000억원'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2024년 0.18% → 2025년 0.15%)	5년간 -10조원 연평균 '-2조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인하(2023년 시행)	2023년 79조 6000억원, 2024년 77조 6000억원 '-2조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보유세 완화(2023년 시행)	2023년 4조 7000억원, 2024년 4조 1000억원 '-6000억원'

※2023년 세수는 재추계 기준, 2024년 세수는 확정예산 기준

唇

--- 금융위기(2008년) 이후 미분양 주택 주요 세제혜택

2008년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법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법인세 면제
2009년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과밀억제권역 60%, 지방 100%) • 다주택자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2010~2011년	• 지방 미분양 주택,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50% 감면
2013년	• 신축 · 미분양 주택, 5년 이내 양도차익 100% 감면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전액 면제 등



관계형 조직이 규칙 위반을 조장한다

규정이나 윤리관에 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도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대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회의 단점이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제안 내용보다는 제안 자가 누구인지에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는 누가 하는 말이냐에 무게를 두는 셈이다. 그 때문에 규칙 위반이 쉽게 인정되고 만다.

물론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견없이 터놓고 듣는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특히나 조직의 대표자는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위험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관계성의 폐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어떤 제안에 대해 심의할 때 제안자의 이름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신경쓰다 보면 정당한 심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이름을 가려 편견 없이 내용을 검토하려는 의도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개발사업 위탁받은 법인이 단순 대행업무만 한다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으로 함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 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 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질 의

•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공사에게 위탁하여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히 대행한 경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개발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 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개발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질 의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 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제 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520, 2023.04.19

▮질 의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단환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환 지예정인 토지소유자들이 「주택법」 제11조의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명의 환지된 토지 소유 권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함을 전 제함

회 신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 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 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99, 2023.05.17

▮질 의

-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갑'(이하 "신청인")은 국내사 업장이 없는 독일소재 외국법인 '** △△△△ -@@@@@ GMBH & GO, KG'에게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용역(이하 "쟁점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금 \$000을 '**.3.27.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화로 수령함
- ※ 본건 사전답변 신청은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 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상호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설치를 위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 오는 2월 29일까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 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 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 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 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기운데 시가총액 10억위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제를 매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 지주 실수하는 사안을 안내하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근로자,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시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 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 용된다.

이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시립학교 직 워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 된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 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월 29일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4. 2

-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7 8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구 문	장내거래	장외거래	K-DTC 거래	장외거래
대 주 주	0	0	0	0
		0	0	
소액주주	X		중소·중견기업	0
			소액주주X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 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 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 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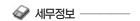
2. 6.	2. 7.	2. 14.
네이버 등 ¹⁾	문자메시지 ²⁾	우편 안내문 ³⁾

- 1)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 2)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3)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 (맞춤형 도움자료)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 |

사례 ①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을 장내매도하여 50백 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신고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 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확인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②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 씨는 '23.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 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 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③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 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후자의 경우 20%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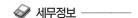
사례 ④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 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합니다.
한번 더 확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에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 대상	□ (대상) '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대주주 기 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약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5	_	
기 준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3. 1. 1. ~ 23. 12. 31. 양도문)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의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상장법인(소득령 \$157④) 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⑥)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축 ○ 3촌 이내 인착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기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어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율 세율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대즈즈	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3. 1. 1. ~ '23. 12.	31. 양도분)	
(관세대상 판단시)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전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보다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보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 ** 상장법인(소특령 \$157④) 비상장주식(소특령 \$157⑥) - 최대주주 * 최대주주 * 최대주주 * 3존 이내 인적 * 경영지배관계 * 천명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구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 1 합산대상 없음 * 최대주주 * * 1 합산대상 없음 * 최대주주 * * 1 합산대상 없음 * 최대주주 * 25% 그 외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다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하는 기관하는 기관하는 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기관하는 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기관 * 기관하는 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기관 * 기	, _	구 분		11
판단시) 포는 시가총액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고스벡		
3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판단시)			470 0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	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상장법인(소득령 §157④) 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⑥)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지계비속 - ('23. 1. 1. 이후 양도주식)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지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세월 10% ~ 30% 적용 -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최과 25% - 그 외 주식 양도 1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그 외 주식 양도 10% - 과세표준 3억원 최과 25% - 그 외 주식 양도 20% -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 '' - '' - ''''''''''''''''''''''''''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	[†] 원 이상은 '24.1.1. ○	후 양도분부터 적용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 천본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최대주주 ** ** 화대주주 ** ** 한산대상 없음 ** 참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최대주주(방장·비상장 포함) **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10% 가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당시 및 후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 하 당시 및 후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 당시 및 후택스·손택스(이7시-23:30)를 통해 가능		<과세대상 대주주 판	정시 합산대상 범위>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 1. 1. 이후 양도주식) ('23. 1. 1. 이후 양도주식) 제계비속 ○주구1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제월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관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관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신고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상장법인(소득령 §157④)	비상장주식(소	:득령 §157⑥)
합산 대상 등수관계인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 전계비속 ' 주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회대주주 × 회대주주 * 한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최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최대주주 。	최대주주 。	
대상 특수관계인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최대주주 × 의 제대주주 × 의 해보관계 -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세월 10% ~ 30% 적용 -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최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인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등 나는 기한 이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특수관계인 ○ 경영지배관계 화동 ('23. 1. 1. 이후 ○ 전기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최대주주 × 회대주주 × *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월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가능				
('23. 1. 1. 이후 ' 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지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최대주주 × 최대주주 *				
('23. 1. 1. 이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7 1 2/112		좌	동
양도주식)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최대주주 × 한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월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신고 납부 기한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23. 1. 1.			
최대주주 ×	이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세월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신고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양도주식)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월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신고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산하여 판단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ㅂ	속, 경영지배관계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 큰 주주) 여부는 특	수관계인의 지분을 합
세율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 능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산하여 판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 능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 능 납부 기한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세율 10% ~ 30% 적용	소액·	スス T T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신고 남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세율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신고 능 납부 기한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세율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주식 양도 그 외 주식 양도	10% 20%
납부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세율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 양도 그 외 주식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 20% - 30% 적용
기한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미	중소기업 주식 양도 그 외 주식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 20% - 30% 적용
	신고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미	중소기업 주식 양도 그 외 주식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 20% - 30% 적용
	신고 납부	□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 (신고) '24. 2. 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미능	중소기업 주식 양도 그 외 주식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내일 06시 ~ 24시)와	10% 20% ² 30% 적용 우편·방문을 통해 가



참고 2

주식 양도소득에 까주 묻는 질문 (FAQ)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상장법인	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구 군	장내거래	장외거래	K-D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신고·납부 대상 제인	신고·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신고·납부 대상		
	깨뀍		소액주주 제외			

-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3, 9, 17.)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2. 29.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11.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157④,⑤)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 분	'16. 4.	1, 0 3	‡ 9	양도	'1E	3. 4.	1. 0 3	卓 9	양도	'20	J. 4.	1. 0	후 '	양도	'2	4. 1.	1. 0 3	후 2	당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u></u>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 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 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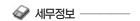
구 분	상징	법인				
	최대주주 。					
	• 바	우 자				
=1 +1 -11 +1	。 4촌 C	기내 혈족				
합산대상	∘ 3촌 이내 인척					
특수관계인	∘ 경영지배관계					
() =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3. 1. 1. 이후 양도주식)		기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_, ,	배상 없음				

○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24년 8월 예정신고('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24년 2월 예정신고 ('23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이 적용됨



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습니다.
 -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 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 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하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임

8.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 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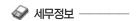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 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 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 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1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 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 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5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 ~ 24:00, 납부는 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3

꾸겍 양도소득/M 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 접속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PC)	○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 2. 29.)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자료 조회>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 대상자: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4 50 1	。 접근 방법:「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손택스 (미네이)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모바일)	※ 앱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 2. 29.)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신고 기한: '24. 2. 29.(목)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고	또는 직접 접수

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손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이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수납)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4

홈택스·온택스에게 안내하는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세합성도) 성고고극세 취세계요 중 네무무리 함치 중에 성도를 세종
2. 시그님 자사내게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및 중소기업 요건, 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4. 전자신고가이드

5.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6.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참고 5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세율 적용 (소득세법 §104)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신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구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구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 1. 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 ~ 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대주주 판단 (소득령 §157④)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경우 * 상장법인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 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손익 통산 (소득령 §167조의2)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 1. 1. 이후 국내·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기본 공제 (소득세법 §103)	○ '23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 액에서 연간 250만 원만 공제 가능
기타 (소득세법 §94① 3호가목)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 만 신고한 경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디지털 국세행정 구축에 박차를 가하다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 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하여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 일본, 세르비아, 페루, 헝가리, 르완다,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등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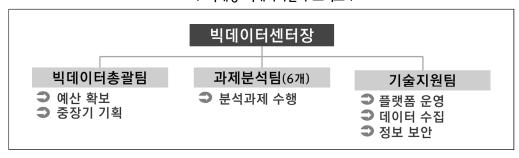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한 CI지털 국세행정 구축

- □ 국세청은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6월 국세청 내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지 난 4년 6개월여간 활발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과세자료와 국세청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등 디지털 세정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분석, 운영 등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KAIST 등)과 연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조직도 /



□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구현해 나가 고 있습니다.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개비스 제공

●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 기 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1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수집*한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 부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추가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소득 종류별 내역,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등
 - '21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주요경비의 신고 가능성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 그 결과, '23년에는 기준경비율 신고인원 38.8만 명 중 37.6만 명(96.9%)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16년부터 신고서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채워주고, 납세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서비스(필요시 수정)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 간편신고 대상 납세자
 - '22년부터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지급명세서 자료와 최근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유리하도록 공제내역을 최적화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모두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하였으며
 -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받은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반영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 국세청은 납세자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세목별로 신고와 관련된 도움자료를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납세자 유형별 신고도움자료 제공에서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각종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모두 27종*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

- 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제공한 주요 도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합소득세 13종, 법인세 6종, 부가가치세 4종, 연말정산 2종, 증여세 2종
- ① (세액 공제·감면 안내) 법인사업자의 업종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73만 개 법인에게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혜택 *을 안내하였으며,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
- 법인사업자의 고용현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전년도에 비해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23만 개 법인에게 고용증대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세 팁을 안내 ('23.3월)하였습니다.

/ 고용증대 기업의 세제혜택 사항 /

공제 항목	공제 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전년 대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1,100~1,300만 원 (중소기업 외) 400~900만 원 ❷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700~770만 원 (중소기업 외) 450만 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전년 대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의 50~100% 공제

② (맞춤형 연말정산 공제 안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 은 충족하였으나, 공제 이력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연말정산 공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대상자 선정 유형 /

공제항목	안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유형별(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 특징을 분석하여 감면신청 이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안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소득 공제를 적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안내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상환내역)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으나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는 납세자 에게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중 월세액이 공 제 요건에 맞아 환급 가능한 납세자에게 안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주택 세대주가 주택 취득용 대출을 실행하여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납세자에게 안내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용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안내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외부 수집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거대 AI기술을 활용한 국/N업무 확대 수진

●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

-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문자 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챗봇 상담 운영)'19년 10월 부가가치세 챗봇을 시작으로 총 6종류의 신고·신청 관련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과시간 전·후, 주말·휴일 등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세법 반영 및 미응답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 등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하여 응답률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 '23년에는 챗봇을 통한 상담 건수가 187만 건*에 이르는 등 챗봇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 '23년 챗봇 상담 건수 : 연말정산 66만 건, 종합소득세 46만 건, 장려금 35만 건 등

② 생성형 AI기술 국세행정 적용

- □ '24년에는 국세행정 업무에 한국형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지능정보 기술 환경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 우리나라의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 (AI 세법상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하여 각종 신고 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하겠습니다.
 - (AI 지식검색)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화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공정과/에 구현을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 구축

- □ 국세청은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에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능적 탈세 대응)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등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납세자의 정보(생년월일, 성명 등)를 분석해서 동일인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탈루 세금 파악 등 세원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파악)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내역,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실거주지와 숨긴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의 납세의무 회피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전자/세정 전/세계 적극 홍보

□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운영현황, 분석사례, 노하우 등 대한민국의 첨단 전자세정에 대해 전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역벤치마킹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역벤치마킹 제공 현황 /

('19년) 중남미국가(12개국) ('20년) 코스타리카 ('21년)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헝가리, ADB회원국(68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22년) 일본, 중남미, 페루, 헝가리, 덴마크

○ '23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헝가리, 르완다, 세르비아 조세국의 요청으로 세정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세계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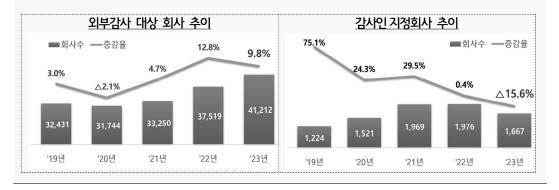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첨단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세행정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과학세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 2024. 1

-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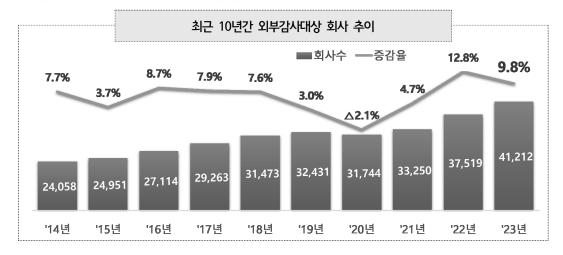
- ◆ '23년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1,212사로 전년 (37,519사) 대비 3,693사 증가 (9.8%↑) 하였습니다.
-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며, 최근 2년간 증가율 (11.3%) 이 과거10년 평균 (5.5%)의 두 배에 달합니다.
- ◆ 회계제도 보완 결과 '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309사 급감(15.6%↓) 하였습니다.
- √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新 외감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회사가 감소했고, 절반을 상회했던 상장법인 지정비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 * ('21년) 51.1% → ('22년) 45.3% → ('23년) 37.6%
- ◆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3년도 외부감/ 대강 회/ 현황

1 | 개 요

- □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2년말 37,519사에서 '23년말 현재 41,212사로 3,693사 증가 (9.8%↑)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 (과거) 자산 120억원↑ or 자산 70억원↑ & 부채 70억원↑ or 자산 70억원↑ & 종업원 300명 ↑ 등
 - (현행) 자산 500억원↑ or 매출액 500억원↑ or ①~④ 중 2개 이상 ①자산 120억원↑,②부채 70억원↑,③매출액 100억원↑,④종업 원 100명↑) 등
 - 최근 2년간 증가율 (11.3%) 은 과거 10년간 평균 (5.5%)의 2배 수준



2 |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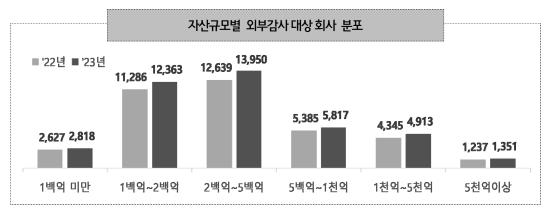
- ① (상장 여부) 비상장회사가 37,947사로 대부분 (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 (6.4%), 유한회사 623사 (1.5%) 順
 - 비상장 주식회사 (10.3%) 와 유한회사 (10.1%) 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 (3.9%) 을 크게 상회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 분									
		주권	상장		비상장		유한회사 (비상장)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466		(-100)		
'22년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비중)	(2.2)	(4.2)	(0.4)	(6.8)	(91.7)	(98.5)	(1.5)	(100.0)	
'23년	833	1,680	129	2,642	37,947	40,589	623	41,212	
(비중)	(2.0)	(4.1)	(0.3)	(6.4)	(92.1)	(98.5)	(1.5)	(100.0)	
증감	+14	+89	Δ3	+100	+3,536	+3,636	+57	+3,693	
(증감률)	(+1.7)	(+5.6)	$(\Delta 2.3)$	(+3.9)	(+10.3)	(+9.8)	(+10.1)	(+9.8)	

② (자산 규모) 2백억 원~ 5백억 원이 13,950사 (33.8%), 1백억 원~2백억 원이 12,363사 (30.0%) 로 절반 이상을 차지



③ (결산월) 12월이 39,970사로 97.0%에 달하며, 3월 553사 (1.3%), 6월 314사 (0.8%), 9월 138사 (0.3%) 順

결산 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분포 ('23년말)

(단위: 사, %)

구분 결산월	1	2	3	4	5	6	7	В	9	10	11	12	합계
상 장	6	2	23	1	4	20	-	1	6	-	1	2,578	2,642
비상장	51	36	530	35	29	294	10	12	132	32	17	37,392	38,570
합계	57	38	553	36	33	314	10	13	138	32	18	39,970	41,212
(비중)	(0.1)	(0.1)	(1.3)	(0.1)	(0.1)	(0.8)	(0.0)	(0.0)	(0.3)	(0.1)	(0.0)	(97.0)	(100.0)

3 기가 감사인 선임 현황

□ 전체 외부감사 대상 (41,212사) 중 27,645사 (67.1%)는 전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303사 (17.7%)는 변경

[나머지 6,264사 (15.2%)는 초도 감사로 신규 선임]

○ 전체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변경 선임 비중이 35.9%로 비상장사 (16.5%) 의 두 배를 상회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단위: 사, %)

구 분	상장	(비중)	비상장	(비중)	합 계	(비중)
계속 선임	1,660	(62.8)	25,985	(67.4)	27,645	(67.1)
변경 선임	949	(35.9)	6,354	(16.5)	7,303	(17.7)
신규 선임	33	(1.3)	6,231	(16.1)	6,264	(15.2)
합 계	2,642	(100.0)	38,570	(100.0)	41,2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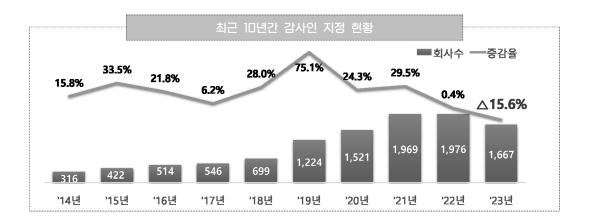
'23년도 감/아인 끼정 현황

1 기 개 요

- □ '23년 말 현재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309 사 감소 (15.6%↓)
 -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회계제도 보완 방안('23.6월)」에 따라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新 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

'23년 지정사유 합리화 주요 내용

- ☑ (직권 지정) 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②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연결→별도),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
 - ☞ ①,② '24년도 재무기준 직권지정 177사 감소
 -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6사 지정 해제
- ☑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 '24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 92사 감소



2

지정 비율

- □ '23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축소
-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 사유를 지속 합리화한 결과 절반을 상회 ('21년 51.1%) 했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新외감법도입 초기수준 ('19년 34.7%) 으로 하락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a)	'23년(b)	증감(h - a)
 전 체	지정회사(A)*	699	1,224	1,521	1,969	1,976	1,667	Δ309
	전체 외감(B)	31,473	32,431	31,744	33,250	37,519	41,212	3,696
"	지정비율 (A/B)	2.2	3.8	4.8	5.9	5.3	4.0	Δ1.3
	지정회사(A)*	284	807	1,060	1,256	1,152	994	Δ158
상 장	전체 상장사(B)	2,230	2,326	2,382	2,457	2,542	2,642	100
	지정비율 (A/B)	12.7	34.7	44.5	51.1	45.3	37.6	Δ7.7

^{*} 지정시점 기준 예) '23년에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3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3 기정 사유별 지정 현황

- ① (주기적 지정) '23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677사) 대비 106사 감소 (15.7%↓)
 - 주기적 지정 대상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감소폭(92사↓, 63.0%↓)이 주권상장법인(14사↓, 2.6%↓)을 크게 상회

주기적 지정 현황

(단위: 사)

'22년 (a)				'23년 (b)		증감 (b - a)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677	531	146	571	517	54	Δ106	Δ14	Δ92	

○ '23년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 지정이 375사 (상장 336, 비상장 39) 이며, '23년 신규 지정은 196사 (상장 181, 비상장 15)

연속·신규 주기적 지정 내역

(단위: 사, %)

								•	<u> </u>
상장 (a)				비상장 (b)		합계 (a + b)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517	336	181	54	39	15	571	375	196
	(90.5)	(58.8)	(31.7)	(9.5)	(6.8)	(2.6)	(100.0)	(65.7)	(34.3)

- ※ 괄호 안은 주기적 지정회사 수(571사) 대비 비중 의미
- ② (직권 지정) '23년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1,299사) 대비 203사 감소 (15.6%↓)
 -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의 順
 - 재무기준 직권 지정 사유 합리화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177사 감소 (51.2%↓)
 - 지속적인 점검·계도로 감사인 미선임 (33사↓, 27.3%↓), 선임절차 위반* (37사↓, 52.1%↓) 등 제도 미숙지에 따른 직권 지정도 축소
 - * 예) 감사인선임위원회 미개최, 구성원 자격 및 한도 위반, 위원회 운영 위반 등

사유별 직권 지정 현황*

(단위: 사. %)

(인귀: 사								^1, /0)		
구 분	'22년 (a)				'23년 (b)			증감 (b-a)		
구 군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상장예정법인	460	22**	438	466	18**	448	+6	Δ4	+10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등)	346	346	-	169	169	-	Δ177	Δ177	-	
관리종목	130	116	14	148	137	11	+18	+21	Δ3	
감사인 미선임	121	1	120	88	-	88	Δ33	$\Delta 1$	$\Delta 32$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52	51	1	60	60	-	+8	+9	Δ1	
감리조치	40	25	15	40	21	19	-	Δ4	+4	
회사요청	36	34	2	46	43	3	+10	+9	+1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71	4	67	34	10	24	Δ37	+6	Δ43	
횡령·배임 발생	17	16	1	19	18	1	+2	+2	_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8	3	5	10	-	10	+2	Δ3	+5	
기타	18	3	15	16	1	15	Δ2	Δ2	-	
합 계	1,299	621	678	1,096	477	619	Δ203	Δ144	Δ59	
(증감률)							(Δ15.6)	(Δ23.2)	(Δ8.7)	

^{*} 지정 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 지정 사유로 분류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 □ 감사인 지정대상 1,667사에 대하여 53개 회계법인('22년 66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 (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사(51.0%)로 전년(855사, 43.3%) 대비 4사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7.7%p 증가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구 분	'22년 (a)	(비중)	'23년 (b)) (비중)	증감 (c=b-a)	증감률 (c/a)
가군 (Big 4)	855	(43.3)	851	(51.0)	Δ4	Δ0.5
그 외*	1,121	(56.7)	816	(49.0)	Δ305	Δ27.2
합 계	1,976	(100.0)	1,667	(100.0)	Δ309	Δ15.6

^{* &#}x27;22년 62개 회계법인, '23년 49개 회계법인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코넥스상장사

Ш

평가 및 향후 계획

- □ (평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에도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대상을 합리화하고 외 감제도에 대한 점검·계도를 지속한 결과
 - 지정회사 수가 新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감소하였고, 지정비율도 新외감법 도입 초기 수 준을 회복
-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참고 - 외부감사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 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 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 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주기적 지정(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2024. 2

〈주요 내용〉

-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 *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 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
-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 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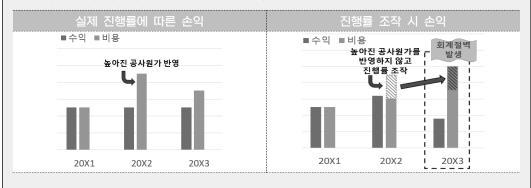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

-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 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 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으 며.
 -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선정·예고('23.6월)

<참고> 건설 · 조선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 1)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 익 인식
- 2) 진행률 계산 시 원가상승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종료 시 일시에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는 회계분식 사례가 존재



추진 배경

□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 반 등 발생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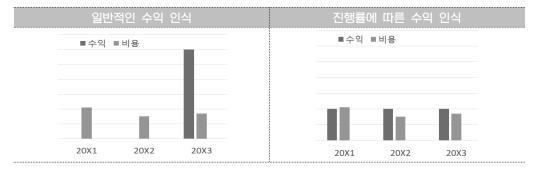
- 회사가 손실을 은폐하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회계절벽 "현상)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 래
-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주산업 회계처** 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회사**, **감사 인** 등이 적극 활용토록 유도

수주산업 회계처리의 특수생

1 진행률을 사용한 수익 인식

- □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 상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 의 프로젝트(계약)을 진행하게 됨
-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하여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익 인식

〈참고〉 진행률 적용에 따른 경영성과 표시(예시)



- ※ 진행률 적용에 따라 수익 총액(파란색)을 계약기간(20X1~20X3)에 걸쳐 인식하므로 회사 의 경영성과가 실제상황에 맞게 표시(예시는 연도말 진행률이 33%, 66%, 100%로 가정)
- □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하여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 회계를 하는 사례 발생

2 진행률 조작과 회계절벽 발생

- □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발생원가/총공사예정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진행률 관련 회계 위반 사례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여 진행률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대표적
-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 하므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회계절벽"현상)

수꾸산업 관련 깨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11례

1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미반영) A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 가 증가요인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축소 산정하여 매출액 을 과대계상
- 총공사수익 초과분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 미인식
 - * K-IFRS 제1037호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토록 규정
- □ (공사진행률 상향조작) B사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상향조작

2 발생원가의 과대계상

- □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 C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
- □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 D사는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
 - * (전산 조작 내용) ① 사업 종료 후 원가를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원가로 계상, ② 계약 前 발생원가 및 선급금 등을 해당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의 원가로 처리

3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 □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 부당가산) E사는 발주사가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 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매출 과대인식
- □ (지연배상금 미차감) F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나 계약 금액에서 지연배상금을 미차감

4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 □ (우발부채 미공시) G사(시공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음
- □ (충당부채 과소계상) H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동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 현재(법적)의무 존재, 자원 유출가능성 높음,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

결산·외부감/사 / I 유의/사항

- ◆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고
- 공사 관련손익 및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 필요

1 회사 유의사항

회사 ①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를 확인 및 반영하세요!

 ✓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당사 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

회사 ②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하세요!

- ✓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 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합니다.
 - *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은 금액

회사 ③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미진행분),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 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회사 ④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세요!

- ✓ 지급보증과 약정사항 등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 ※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24.1.3. 보도자료) 참고

회사 ⑤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외부감사가 수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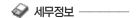
2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외감 ①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주요 공사 관련 회사의 견적, 유사 공사실적 대비 계약금액·예정원가, 현장 보고자료,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감② 선급금 투입여부 및 활동별 원가 집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세요!

✓ 발생원가 중 협력업체 선급금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사업별 원가 관련 내부통제 및 사업별 집계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감 ③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 수주산업 감사경험이 부족한 경우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공사의 리스크, 시 장상황,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감 ④

우발부채 · 충당부채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세요!

✓ 계약서·조회서 등을 입수하여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에 대한 경제적 자원 유출가능성 변동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V

향후 계획

- □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큰 만큼.
 -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임
 - ✓ 금융감독원은「'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 예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해 '24년 중 중점심사 실시 예정
 - ✔ 상기 유의사항 등을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홍보 예정